

- 중국 UNIPEC사와 공동비축 추진 -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5월 16일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 UNIPEC사와 원유 200만B을 공동비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계약에 의해 석유공사는 금년 6월 1일부터 2002년 5월까지 1년간 울산 비축기지 내 저장시설을 UNIPEC사에 대여하고, UNIPEC사는 동 저장시설에 석유공사의 원유를 저장하게 된다.

이번 계약 체결로 석유위기시 국내에 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비축시설을 대여하게 되어 200만B의 간접비축 효과와 함께 연간 약 40억원의 임대료 수익이 예상된다.

석유공사는 지난 '99년부터 노르웨이 국영 Statoil사 와도 1,130만B 규모의 공동비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금번 UNIPEC사의 원유 유치로 국제 공동비축 규모는 총 1,330만B에 달하게 되어 최대 6.5일분의 간접비축 효과가 기대된다.

< 별첨 >

□ 국제 공동비축사업 개요

- 석유위기 시 국내에 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산유국 또는 국제 메이저 회사에 비축시

설을 대여

- 안정적인 공급물량 확보로 간접비축 효과 및 여유 시설의 효율적 이용 도모
- 산유국 또는 메이저사는 국내 비축시설에 원유 저장 후 국내 정유사 또는 외국에 판매함으로써 동북아 판매망 확대 및 물류비용 절감

□ UNIPEC사 현황

- 회사명 : 통칭 UNIPEC
China International United Petroleum & Chemicals Co., LTD

○ 설립년도 :

- 1993년 (Sinopec과 Sinochem 각 50% 출자)
- 1999년 Sinopec이 70% 지분소유

○ 주요사업분야

- 중국 양대 석유회사 중 하나인 Sinopec의 자회사로 중국 원유수입의 60~70% 차지
-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수출입 및 국내판매

○ 매출액 : U\$ 3,129백만불(1999)

- 석유수입·판매부과금 고시 개정 -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2001.7.1일 시행)으로 석유판매부과금 신규 징수대상에 부탄 및 부생연료유가 포함됨에 따라 동 품목에 대한 부과금 납부기한과 징수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석유의 수입·

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개정고시할 예정이다.

동 고시개정의 주요내용은, 석유화학사의 부생연료유

중 등유와 경쟁관계인 등유대체 부생 연료유에 한하여 부과금 징수대상이 되도록 부생연료유의 용어를 정의하고(안 제5조제5항) 부탄 및 부생연료유의 판매부과금 납부기한은 등유의 판매부과금 납부기한과

동일하게 특소세 부과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로 규정한다. (안 제10조제2항)
동 고시개정에 따라 약 565억원의 석유판매부과금이 추가로 징수될 전망이다.

〈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석유판매부과금 〉

| | 현 행 | 개 정 | 내수전망(01.하) | 추가징수액 |
|-------|-------|-----------|------------|---------|
| 등 유 | 20원/ℓ | 23원/ℓ | 34,711천bbl | 165.6억원 |
| 부생연료유 | - | 17원/ℓ | 930천bbl | 25.1억원 |
| 부 탄 | - | 19,031원/톤 | 1,971천톤 | 375.0억원 |

<참고> 석유부과금고시개정(안) 신·구 대비표

<참고>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용어의 정의) ①(생략) ② 고급휘발유라 함은 옥탄가 94이상인 휘발유를 말한다. ③ ~ ④(생략) <신설> | 제5조(용어의 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옥탄값 94이상인 자동차용 휘발유를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부생연료유라 함은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생연료유를 말한다. 다만, 판매부과금 징수대상 부생연료유는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제외한다. |
| 제6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①(생략) ② 석유제품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등유와 고급휘발유를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로 한다. | 제6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① (생략) ② ----- 등유 · 고급휘발유 · 부탄 또는 부생연료유를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로 -----. |
| 제7조(부과금의 징수대상) ①(생략) ②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과금을 징수하는 대상은 등유와 고급휘발유로 한다. | 제7조(부과금의 징수대상) ① (생략) ② ----- 등유, 고급휘발유, 부탄 및 부생연료유로 -----. |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8조(부과금의 부과기준) ① 석유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원유 및 석유제품(프로판 및 부탄을 제외한다) : 1리터당 <u>13원</u></p> <p>2. 천연가스 : 1톤당 <u>6,908원</u></p> <p>② 석유제품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등유 : 1리터당 <u>20원</u></p> <p>2. (생략)</p> <p><신설></p> <p><신설></p> | <p>제8조(부과금의 부과기준) ①-----</p> <p>-----</p> <p>1. -----</p> <p>----- <u>14원</u></p> <p>2. ----- <u>9,750원</u></p> <p>②-----</p> <p>1. ----- <u>23원</u></p> <p>2. (현행과 같음)</p> <p>3. 부탄 : 1톤당 <u>19,031원</u></p> <p>4. 부생연료유 : 1리터당 <u>17원</u></p> |
| <p>제9조(부과금의 징수대상물량 산정기준) ① (생략)</p> <p>② 등유에 대한 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물량은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량(면세,공세,환급물량은 제외)으로 한다.</p> | <p>제9조(부과금의 징수대상물량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등유 · 부탄 또는 부생연료유에 대한-----</p> <p>-----</p> |
| <p>제10조(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① (생략)</p> <p>② 등유의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납부는 특별소비세의 부과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고급휘발유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납부는 교통세의 부과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 <p>제10조(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등유 · 부탄 또는 부생연료유 판매시-----</p> <p>-----</p> <p>-----</p> <p>③ (현행과 같음)</p> |

- 가짜휘발유(용제)특별관리대책 마련 -

최근 고유가 지속으로 소규모 화공약품제조공장을 중심으로 톨루엔과 솔벤트(溶劑)를 섞어 만든 가짜휘발유의 불법 유통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짜휘발유의 주원료를 생산하는 솔벤트(溶劑)제조업체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하였다.

가짜휘발유는 탈세, 공해문제 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주유소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휘발유 제조 및 유통의 주범인 소규모 화학제조공장 및 페인트상 등은

석유사업법상 품질검사 대상이 아니므로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수단이 없었다. 따라서 가짜휘발유 제조원료인 솔벤트(溶劑)와 톨루엔중 석유사업법으로 관리가능한의 솔벤트(溶劑) 생산·판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가짜휘발유의 제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솔벤트(溶劑)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하여, 석유사업법상 용제 제조·판매업자의 용제수급상황기

록부 보고 사항을 철저한 관리하고(석유사업법 제28조)

〈보고의무 위반시 제재 기준〉

| 위반사항 | 사업자명 | 행정처분 | 과징금 | 과태료 |
|--------------------------|--------|--------|------|------|
| 석유사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 용제제조업자 | 사업정지1월 | 1억원 | 3천만원 |
| | 용제대리점 | " | 3천만원 | 1천만원 |
| | 용제판매소 | " | 1천만원 | 2백만원 |

* 과태료부과기준 : 보고사항 위반

용제수급상황기록부 보고 기한을 현행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고(시행규칙 개정) 각 시·도에 용제판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지시하고 필요시에는 용제조정명령(실수요자에 대한 용도증명제)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溶劑調整命令

- 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질서문란시 석유수급에 대하여 조정 명령권 발동(석유사업법 제21조)
- 용제실수요자를 등록토록하고 용제판매시 실수요자 확인 후 판매토록 함
- 위반시 제재 :

| 위반사항 | 사업자명 | 행정처분 | 과징금 |
|-----------------------------|--------|---------|------|
| 석유사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용제제조업자 | 사업정지 3월 | 2억원 |
| | 용제대리점 | " | 5천만원 |
| | 용제판매소 | " | 3천만원 |

〈붙임1〉

□ 석유품질검사소의 품질검사 결과

| | '98 | '99 | 2000 | 2001.1/4 |
|----------------|--------|--------|--------|----------|
| ○총검사건수(A) | 50,024 | 53,291 | 57,769 | 16,645 |
| ○불량석유제품(B) | 235 | 423 | 276 | 97 |
| - 품질저하 | 81 | 91 | 46 | 2 |
| - 유사석유제품(C) | 154 | 332 | 230 | 95 |
| ○불량율(B/A, %) | 0.46 | 0.79 | 0.48 | 0.58 |
| ○유사적발율(C/A, %) | 0.31 | 0.62 | 0.40 | 0.57 |

□ 연도별 휘발유소비량

| | 휘발유옹자동차 등록대수(대) | 증가율 (%) | 국내휘발유 소비량(천BBL) | 휘발유소비량 (t/대) |
|--------|-----------------|---------|-----------------|--------------|
| 94년 | 4,813,495 | 20.3 | 51,089 | 1,687 |
| 95년 | 5,601,675 | 16.4 | 59,382 | 1,685 |
| 96년 | 6,427,783 | 14.7 | 67,971 | 1,681 |
| 97년 | 7,028,201 | 9.3 | 71,358 | 1,614 |
| 98년 | 6,950,807 | -1.1 | 61,089 | 1,397 |
| 99년 | 7,077,525 | 1.8 | 63,879 | 1,435 |
| 2000년 | 7,214,061 | 1.9 | 62,382 | 1,375 |
| 연평균증가율 | 7.0% | - | 3.4% | △3.4% |

□ 일반용제 현황

| 일반용제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
| 별 칭 | 벤진 | 고무용휘발유 | 슬벤트나프타 | 미네랄스피릿 | 크리닝솔벤트 |
| 용 도 | 세척용 | 고무용, 도료용 | 추출용 | 도료용 | 드라이크리닝, 도료용 |

〈붙임2〉

가짜휘발유 유통흐름도

